

외국인교원 인사규정(3-3-15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 외국인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4.4., 2015.8.27)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"외국인교원"이라 함은 외국어분야 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 하는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국적 소지자를 말한다.

② (삭 제)

제3조(적용범위) 외국인교원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자격) 외국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. 단, 학사학위소지자도 강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2.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받은 자.
3. 대학교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.

제5조(직급) 직급을 부여함에 있어 교육 및 연구경력연수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의 교원자격 기준에 의거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채용) ① 외국인교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장은 외국인교원 채용신청서 <서식1>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인교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력서(연구실적 포함) 1통
2. 학력 및 경력증명서(번역문) 각 1통
3. 여권사본 1부
4. 외국인등록증명서(채용 후 제출) 1통
5. 신원보증서 2통
6.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

③ 총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의거 채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채용예정자로 확정한다.

④ 총장은 외국인 교원 채용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서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승진 및 평가) ① 외국인교원 재승진임용에 대한 소요년수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

은 교원인사규정에 준한다.(개정 2008.4.4)

② 재·승진임용에 대한 평가는 연구실적, 강의평가, 대학기여도평가로 하되,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08.4.4., 2015.8.27.)

1. 재임용 기준 : 소요기간내 강의평가 및 대학기여도평가 결과 각각 평균 70점 이상
(개정 2015.8.27.)

2. 승진임용 기준(단계별 평가) : 1단계 직급별 소요기간내 연구실적 충족자(부교수 200%, 교수 300%)에 한하여 2단계 강의평가 및 대학기여도평가 결과 각각 평균 70점이상(개정 2015.8.27.)

③ (삭제 2008.4.4)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에 제청하여 재·승진임용 할 수 있다.(개정 2008.4.4)

제7조2(특별승진) 제7조의 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인정된 자일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에 제청하여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. (신설 2008.4.4)

제8조(임무 및 복무) 외국인교원은 다음 각 호를 담당한다.(개정 2010.3.1)

1. 대학 강의 : 주당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책임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한다.
2.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
3.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정규 교육
4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
제9조 1(계약의 해지)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8조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외국인교원으로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
3. 신체, 정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4.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
5.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6. 채용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때

제9조의2 (당연퇴직) 외국인교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, 그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.(신설 2010.3.1)

제10조(처우) ①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.

② 외국인교원에게는 본 대학교가 관리하는 주택(기숙사)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용에 상응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외국인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입국항공료(편도)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단, 초기 계약기간 이전에 면직하는 경우는 지급된 항공료 전액을 환수한다.

④ 외국인교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교원은 매년 동계 및 하계방학 중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국할 수 있다. 출국기간은 각각 15일 이내로 하며, 택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인정된다. 단, 성적공람이 끝난 후 출국하여, 개강 7일 전에 입국하여야 한다.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반법규를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근무 중인 외국인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교원 자격 기준

직명	대학졸업자 및 동등자격자			비고
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
전임강사	3	2	1	
조교수	4	2	2	
부교수	7	3	4	
교수	10	4	6	

비고

- 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②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 산정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<별표 2>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접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~100%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③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~100%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<서식 1>

외국인교원 채용신청서

인적사항	성 명		성 별		국적		
	채용후 소속		학부(과)	전공분야	1.일치() 2. 불일치()		
	대상자 국적		활용기간				
학 력	출신학교		입학년월일	졸업년월일	전 공	학 위 명	
	대학						
	대학원	석사					
		박사					
주요경력							
활 용 계 획	강 의	대 학	(교과목명)	(주당시간수)	ZZZ(학점)		
		특별강의(외국어교육원등)		(교과목명)	(주당시간수)	(학점)	
	논문지도	논문공동지도교수					
		논 문 지 도 실 적		(학생수)			
	공동연구	공 동 연 구 자					
		과 제 명					
기 타							
<p>채용의 필요성 및 추천사유(구체적으로 의견 작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외국인교원의 채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>구비서류 : 1. 이력서 1통 2. 학력 및 경력증명서(번역본) 각 1통 3. 외국인등록증(채용후 제출) 4. 신원보증서 2통 5.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0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학과장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left: 100px;">건양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			